

#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도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5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6.

발 의 자 : 김도운, 홍영진, 강혜순,  
박경흠, 김태욱, 문기호,  
안영호, 정재환, 문희성,  
이명녀

### 1. 개정이유

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「69개 기초자치구 및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」('25.12.4.)를 반영하여 의회의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,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1조, 제3조 및 제4조)

나. 입법·법률고문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4. 근거법규: 해당없음

##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6. 1. 30. ~ 2. 9.(10일간) / 의견없음

나.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 : 따로 붙임

다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입법·법률사안 등의 자문·운영”을 “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자문과 그 운영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입법분야”를 “입법 분야”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본인의 승낙서”를 “승낙서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촉 할”을 “해촉할”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·법률고문을 두고, <u>입법·법률사안 등의 자문·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관한 자문과 그 운영</u>----- -----.</p>
<p>제3조(위촉) ① 고문은 변호사, 대학교수, <u>입법분야의</u>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②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<u>본인의 승낙서(별지 제1호 서식)</u>를 받은 후 위촉장(별지 제2호 서식)을 교부한다.</p>	<p>제3조(위촉) ① ----- ---- <u>입법 분야</u>----- 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승낙서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해촉)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해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	<p>제4조(해촉) ----- ----- <u>해촉</u> ----- <u>할</u>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임기)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u>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</u> 할 수 있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5조(임기) ① ----- - <u>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&lt;후단 삭제&gt;</p> <p>② <u>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입하여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료할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.</u></p>

## 참 고 사 항

### □ 국민권익위원회 「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

권고(안)」 중 ‘지방의회 입법·법률고문 연임 제한’ (’25.12.1 의결)

#### ○ 문제점

- 대다수 자치구 의회가 입법· 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여부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
- 연임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거나, 필요한 경우 의장이 연임 또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
- 장기 연임 시 특정인에게 의회 관련 일감 몰아주기, 친소관계에 따른 민관 유착 등 부패 발생 우려가 있고, 다른 전문가의 위촉 기회를 제한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

#### ○ 개선방안

- 부산 수영구의회 등은 입법· 법률고문의 연임여부 및 그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, 대구 남구의회, 인천 남동구의회 등 연임규정이 있는 자치구 의회는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
- 타 기관 우수사례

#### ■ 「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」

**제4조(위촉기간) 제5조(임기) ①**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 
 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.

#### ■ 「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」

**제5조(고문의 위촉기간) ①**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 
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##### 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  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  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  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작성자

- 소 속: 의회사무국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성 명: 이미정
- 연락처: (052)290-4213